

	<b>복수전공및부전공운영규정</b>	규정번호	3-4-33
		제정일자	2026.03.01
		개정일자	-
		개정차수	-
		소관부서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 학칙 제49조의4에 따라 복수전공및부전공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복수전공 및 부전공은 학생이 소속 학과(부)의 주전공 외에 다른 학과의 전공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학습 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.

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복수전공: 학생이 소속학과의 주전공 외에 다른학과의 전공과정을 이수하여 주전공 학위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.

2. 부전공: 학생이 주전공 외에 다른 학과의 전공과정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되 별도의 학위는 취득하지 아니하고 해당 전공의 이수 사실만을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허용학과) ① 복수전공 및 부전공은 일반과정의 학과(전공)에 대해 허용한다.

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과는 복수전공 및 부전공 신청을 제한한다.

1.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르는 학과

가. 간호학과

나. 임상병리학과, 방사선학과, 물리치료학과, 치위생학과

다. 유아교육과

2. 전과한 학생이 전과 이전에 소속되어 있었던 학과

제4조(허용인원) 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허용인원은 제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과별로 허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5조(신청자격) ①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학 후 1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직전학기 기준 학기당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평균 3.0 이상 이어야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.

1.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자

2. 성인학습자 과정으로 입학한 자. 다만, 해당 과정 내의 학과 간 신청은 가능하다.

3.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자

③ 학과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로 인해 신청자격 및 허용인원을 정해야 하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.

④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 중인 자는 해당 전공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기 전에 다른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.

⑤ 수업연한초과자 및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.

제6조(신청 및 승인) ①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소속 학과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학과는 서류 및 면접 등의 방법으로 심의한 후, 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상자를 확정한다.

제7조(소속) ①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자의 소속은 주전공의 학과로 하며, 주전공 학과의 교수를 지도교수로 한다.

② 복수전공 및 부전공 학과는 이수자의 전공 이수를 지도하기 위하여 전공지도교수를 지정

할 수 있다.

제8조(등록) ① 복수전공 및 부전공 신청자는 주전공 학과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에 따라 발생하는 실험실습비는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.

③ 제12조4항에 따르는 수업연한초과 학생은 주전공의 등록금을 적용하여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9조(이수학점) ① 복수전공 이수자는 2년제 22학점 이상, 3년제 3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부전공 이수자는 2년제 12학점 이상, 3년제 17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③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학점은 주전공 졸업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④ 복수전공 및 부전공 승인 이전에 해당 학과에서 이수한 과목은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.

⑤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학점에서 다음 각 호의 교과목은 제외한다.

1. 글로벌현장실습

2. 학기제현장실습

제10조(수강) ① 복수전공 및 부전공 신청한 학생은 해당 학과의 핵심 과목으로 지정된 전공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.

② 수강학점은 최대 2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.

제11조(포기 및 변경) ①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수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이수포기신청서 제출 시 제9조제3항에 따라 이수 포기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하며, 이수구분은 인접선택으로 변경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복수전공 및 부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 중 6학점 범위에서 학과심의 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주전공 학과의 이수학점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, 전환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한다.

④ 복수전공을 부전공으로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다.

⑤ 변경 및 포기신청은 제6조를 따른다.

제12조(학위수여) ①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에 대한 졸업심의는 해당 전공의 소속 학과에서 실시한다.

②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복수전공 학위 또는 부전공 이수 사실을 병기한 학위를 수여한다.

③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학위 및 이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.

④ 주전공의 졸업 및 학위수여는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보류하며, 수업연한초과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을 따른다.

⑤ 제3항에 따라 졸업이 보류된 자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당해학기 졸업시기에 주전공 학위를 수여한다.

제13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